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설

동승동 문예회관 내, 국내 첫 공식조정 기구 탄생
각계 전문가 18명 조정위원으로 위촉

문화공보부가 7월 1일 관계인사 16명을 저작권 심의조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신저작권법(법률 제4016호) 81조에 근거한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가 첫 선을 보였다. 초대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互選에 의해 張仁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56)이 선출됐고 사무국장에는 許禧成씨(前국립중앙박물관 섭외교류과장)가 임명됐다. 이 기구에 주어진 임무는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手數料率 등을 심의하는 것. 동승동 문예진흥원의 미술회관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업무를 개시했는데 현재 예산은 국고 보조와 문예진흥원 기금을 합쳐 4천만원이 확보돼있고 금년중 1억원 정도 경제기획원에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판계 최대의 관심사인 저작권분쟁조정 절차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써넣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사무국도 출판물, 음악저작물, 공연·전시 등 3개분과로 구성돼 있다. 조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1인을 포함해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청된 件별로 돌아가며 맡는다.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이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로 조정부에 대한 기피·제척신청이 허락되고 있다.

법조계·학계·정부측 실무자·전문가·언론계에서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張仁淑 △金東虎(문공부 기획관리실장)
△李容權(문예진흥원 사무총장) △白承吉(유네스코 한국위 문화부장) △朴太永(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金正述(서울고법 판사) △朴元淳(변호사) △安京煥(서울법대) △黃迪仁(서울법대 로마법전공) △朴椿浩(고려대법대 국제법전공) △鄭鎭勝(KDI연구위원 경제학) △金永東(문공부 문화예술국장) △金泰淵(기획원 공정거래심의관) △郭鍾善(科技處 기술정책관) △裴重燮(국회문공위 전문위원) △李重漢(서울신문 논설위원)

저작권분쟁의 특이한 성격에 비추어 소송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당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조정제도가 생긴 취지. 쌍방의 타협에 의해 법질서를 정립함으로써 법정 시비에 따른 여러 손실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재

의 공정성이 관건이 된다. 서로의 관점이 상충되기 마련이어서 모두를 승복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저작물의 보호문제는 단순히 소유권 이념만이 아니라 민족문화 진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 앞으로 국제간의 분쟁 조정에 임하게 될 위원회의 법해석이 주목거리가 돼있다.

이와 관련, 신저작권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86년 7월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韓美 協商合意」는 향후 고조될 저작권분쟁의 「태풍의 눈」이라는 지적이 있다. 데이터 베이스와 위성통신의 보호문제가 再燃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은 저작권을 소급보호하고 있는 배타조약에 가입할 준비를 서두르면서 開途國들에게도 그 가입을 제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불소급조항마저 休紙化될 경우 한국 저작권관련업계가 부딪치게 될 문제는 심각하다.

7월 1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렸던 일본 어뮤즈먼트공업협회의 「謹告」는 10월이후 대두할 국제 저작권분쟁의 한 조짐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諸賢」에게 보낸 그들의 「謹告」는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竊取하는 행위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면서 「예를 들면 가령 明洞의 귀금속상에

서 盜品인 금시계를 시가의 반액으로 파는 행위를 「자유경쟁」 운운 할 수 없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사리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도 盜品을 팔아 외화를 획득하는 자가 국가에 기여하는 이득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가 입는 명예와 신용의 손상중 어느것이 큰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등 매우 노골적이고 구체적이다.

이같이 국제저작권조약가입이 발표되는 10월 이전에 국내저작권법 실시일에 맞추어, 그것도 시국을 논한 「是日也放聲大笑」의 제치있는 명칼럼 바로 아래 실린 日本의 경고문은 「우리들의 투쟁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 읽는 이에게 여러가지를 시사해 주었다.

문제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거리의 하나. 관계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엔 과학기술처가 소관부서로 되어있으나 科技處는 심의기능뿐이고 조정기능등 「여타의 문제는 저작권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법률상론 조정위가 떠맡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출판물과 문화 각 분야의 인접권등을 모두 「조정」해야 할 조정위의 현 체제나 기능으로 보아 많은 분쟁소지를 안고 있는 소프트웨어분야까지 맡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며, 특수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張仁淑 위원장을 찾아서

허희성 국장과 함께 내부운영규정을 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張위원장(前문교부 차관)을 사무실에서 만났다. 56~80년에 걸쳐 문교부에 몸담아온 그는 1960년 발행과장 당시 「저작권법개론」(교육도서刊)을 출간, 이 방면의 최초의 저서를 남긴 인물.

— 살림준비는 얼마만큼 갖추었나요.

「분쟁조정 규칙은 법조계 위원들에게 맡겼고 사업계획도 구상중이지만 아직 무엇 하나 확정된 건 없어요」

— 신저작권법과 더불어 이 기구도 태어난 셈인데 신법이 제정된 의의를 간추린다면. 「저작권 사상과 권리개념이 정립될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과거엔 계약서 한 장 없이 거래가 오갔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믿고 거래하는 게 동양의 미덕일지는 몰라도 일이 어긋나면 믿었던 인간관계가 오히려 금이 가는 수도 있어요」

한 마디로 법의식의 근대화가 시급하다는 것.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신저작권법에 대한 설명회 등 계몽활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 조정의 공정성과 관련, 대정부 관계에서 자율성의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운영의 묘에 달렸겠지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위원들도 편파적이라는 비난은 듣지 않을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했어요」

— 출판계를 비롯, 實際에 밝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문역량면에서 위원회 구성은 만족할만하다고 보는지.

「학계의 경우 저작권 전공자가 없는 형편이니 만족은 어렵지요. 그러나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는 이해관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전문성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연구위원제도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 아직도 저작권법 강좌가 개설된 대학조차 없는데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늘 강좌 개설을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는군요 ”



현재 출판·방송·공연전시 세 분과가 편성돼 있고 분과별로 2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직원 보수와 경비의 현실화, 사업분야 확정과 기구 확충문제가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다. 위원회에 대해, 단순한 분쟁조정과 보상금 책정 외에 저작권에 관한 입법·행정상의 중요 시책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권고하는 제언도 있다.

— 위원회가 급변하는 국내의 저작권상황에 대처할 정보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확보와 관련된 문제라 구상 단계의 것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문공부

내 저작권과 신설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되었어야 할 일이지요」

중공은 국제조약에 가입도 안한 상태면서도 저작권국이 설치돼 있고 전공학도의 해외연수가 활발하다면서 우리의 상황을 개탄했다.

85년 창립된 한국저작권학회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그는 관련분야의 인재가 없음을 못내 안타까와 한다. 「아직도 저작권법 강좌가 개설된 대학조차 없는데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늘 강좌 개설을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는군요」

막상 개설된다 해도 전임강사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는 저작권분야의 학문적 축적이 시급함을 다시 강조했다.